

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6조(계약목적)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제17조(계약 기간)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(계약 방법)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,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.

제19조(이용자의 책임 이행)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,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

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.

제20조(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 월 이용료

-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.

-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.

-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,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인부담금

㉠일반 대상자: 15%

㉡의료 대상자: 6%

㉢경감 대상자: 6%또는 9%

㉣기초생활수급자: 0%

③ 기타비용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.)